

군포도시공사 제2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회계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2021년 3월 10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69호

군포도시공사 회계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개정이유

- 사업 규모의 확대에 따라 부서장 중심의 직무위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도모 및 예산이월 절차를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조직개편에 따라 경영지원부장에게 위임된 계약집행금액(1천만원)을 삭제하고 각 부서장 중심으로 회계관계 직무위임사항을 조정.

회계관직	계약구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분임경리관 (각 부서장)	공사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변동 없음
	제조용역	300만원 이하	<u>500만원 이하</u>	<u>200만원 증액</u>
	물품	200만원 이하	<u>300만원 이하</u>	<u>100만원 증액</u>

- 예산의 이월절차를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게 조정

- 개정규정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군포도시공사 회계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군포도시공사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지정) 제1항 제2호중 “경영지원부장, 각부장(일상경비)”을 “각부장(일상경비)”으로 한다.

제9조(회계관계 직무위임) 제1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1항에 1호내지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계약”

“2.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용역계약”

“3. 예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구입계약”

“4. 급여,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지출”

제82조(일상경비의 범위) 제1항 제3호중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500만원 이하의 공사, 3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2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500만원 이하의 공사, 5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3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로 변경한다.

제189조(예산의 집행품의) 제1항중 제2호를 전부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가목내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

“나.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용역”

“다. 예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구입”

제191조(예산의 이월) 제2항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영지원부
입 안 자	직 위 성 명	경영지원부장 이 현 동
	직 위 성 명	재무회계팀장 최 중 환
	담당 성명 (전화번호)	이 영 윤 (390-7619)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조 ~ 제6조<생략> 제 7조(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지정) ① (생략) 1. (생략) 2. <u>분임경리관 : 경영지원부장, 각 부장(일상경비)</u> 3. ~ 5.(생략) ② <생략> 제8조<생략> 제9조(회계관계 직무위임) ① 경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분임경리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u>경영지원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u> 가. <u>전부서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공사계약</u> 나. <u>전부서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용역계약</u> 다. <u>전부서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구입계약</u> 라. <u>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지출</u> 2. <u>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u> 가. <u>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계약</u> 나. <u>예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용역계약</u> 다. <u>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구입계약</u> 라. <u>급여,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지출</u> ② <생략></p>	<p>제1조 ~ 제6조<현행과 같음> 제 7조(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분임경리관 : 각 부장(일상경비)</u> 3. ~ 5.(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관계 직무위임) ① (현행과 같음) 1. <u>삭 제</u> 가. <u>삭 제</u> 나. <u>삭 제</u> 다. <u>삭 제</u> 라. <u>삭 제</u> 2. <u>삭 제</u> 1. <u>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계약</u> 2. ----- <u>500만원</u> ----- ----- 3. ----- <u>300만원</u> ----- ----- 4. <u>급여,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지출</u>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0조 ~ 제81조<생략> 제 82조(일상경비의 범위) ①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500만원 이하의 공사, <u>300만원</u> 이하의 제조 및 용역, <u>200만원</u> 이하의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경비 ② <생략> ③ <생략> 제83조 ~ 제188조<생략> 제189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생략> 1. (생략) 가. ~ 라. (생략) 2. <u>경영지원부장이 전결로 집행할 사항</u> 가. <u>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공사</u> 나. <u>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물품제조 및 용역</u> 다. <u>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u> 라. <u>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u> 3. <u>부장이 전결로 집행할 사항</u> 가. <u>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u> 나. <u>예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 및 용역</u> 다. <u>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u> ② <생략> 제190조<생략> 제191조(예산의 이월)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2조 ~ 제245조<생략></p>	<p>제10조 ~ 제81조<생략> 제 82조(일상경비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u>500만원</u> ----- -----, <u>300만원</u>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 ~ 제188조<현행과 같음> 제 189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삭 제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2. 부장이 전결로 집행할 사항 가. ----- 나. ----- <u>500만원</u> ----- -----, 다. ----- <u>300만원</u> ----- ② <현행과 같음> 제190조<현행과 같음> 제191조(예산의 이월) ① <생략> ② ----- -----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한다. 제192조 ~ 제245조<현행과 같음></p>	